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22

발의연월일: 2025. 2. 17.

발 의 자:이만희·서천호·권성동

강선영 · 김기웅 · 김소희

김용태 • 권영진 • 구자근

이종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가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기부금 전액을 세액공제하고 있고, 1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기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농촌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 등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기부금 장려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거주자에 대하여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 기부금의 범위를 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른 농촌구조 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기 부한 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할 때 "10만원"을 "20만원"으 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 ③ (생	세액공제 등) ① ~ ③ (현행과
략)	같음)
<u> <신 설></u>	④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른 농
	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
	된 지방자치단체에 10만원 이
	<u>상의 금액을 기부한 거주자에</u>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할 때
	"10만원"을 "20만원"으로 본다.